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361
----------	------

발의연월일 : 2021. 2. 26.

발 의 자 : 이성만 · 이규민 · 이용빈
양정숙 · 홍성국 · 김용민
김진애 · 윤재갑 · 김영호
김승남 · 이수잔^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이유로 한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위반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에 따라 분류하여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그 주취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경우는(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장 높은 경우는(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행위자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이 금지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뿐이고, 이는 범칙행위로 보아 범칙금(현행 법령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의 납부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경우 최고속도 25km 미만으로 운행할 수 있고, 그 중량도 30kg 미만에 이르기 때문에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또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음주운전과 같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있어왔음.

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횡수와 주취상태에 따른 처벌을 하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으로 야기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범자의 수범의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0조제8호·제9호 신설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0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9.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51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 2퍼센트 이상인 사람

제15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

제156조제11호 및 제12호 중 “자전거등을”을 각각 “자전거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에 따른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50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산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계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50조(벌칙)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9.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u><신설></u>	제151조의2(벌칙)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제1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 7. (생략)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2. (생략)

<신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제153조(벌칙)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

② -----

1.·2. (현행과 같음)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

제156조(벌칙) -----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 에 취한 상태에서 <u>자전거등을</u> 운전한 사람	11. ----- ----- <u>자전거를</u> ----- -----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 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u>자전거등</u> 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하 다)	12. ----- ----- ----- ----- ----- <u>자전거를</u> ----- -----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